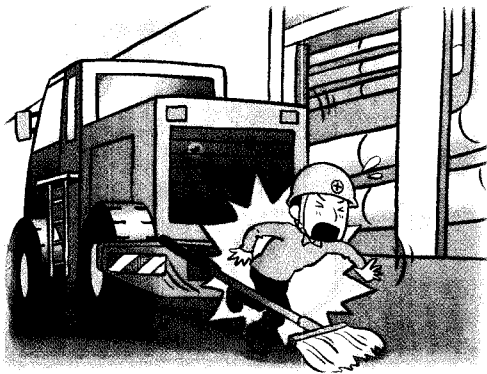


# 》》 슬러그 이송 작업 중 페이로더와 충돌

업종	제강압연업
기인물	페이로더
생산품	압연
재해유형	충돌
피해정도	인적 사망 1명 물적 -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제강부에서 청소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무실 청소를 위해 청소용구를 가지고 제강부 전기로 3호기 옆에서 세척 후 사무실로 가기위해 걸어가고 있는 중 페이로더 운전자가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재자와 충돌, 피재자가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제강부에서 청소 작업하던 피재자가 사무실 청소를 위해 청소용구(대걸레)를 가지고 제강부 전기로 3호기옆에서 세척 후 사무실로 가기위해 걸어가고 있는 중 타 회사의 페이로더운전자가 주변을 살피지 않고 갑자기 후진하면서 피재자를 치어 피재자가 페이로더에 협착되어 사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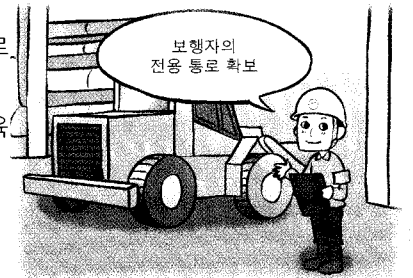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보행자의 전용 통로 미확보
- (2) 차량계건설기계(로더) 작업 경로내 접근
- (3) 페이로더 운전자의 전, 후방 주의의무 불이행

### 나. 예방대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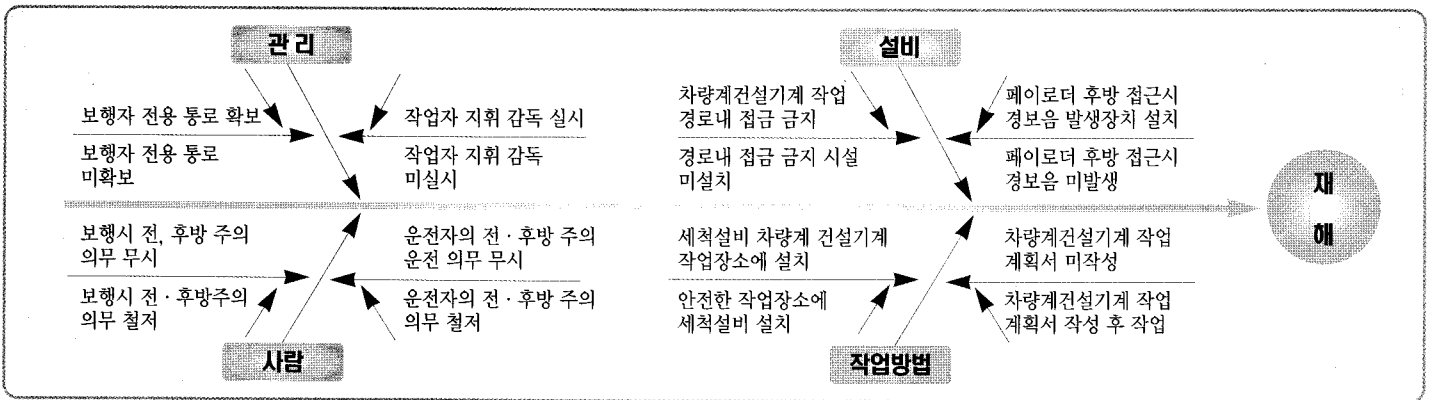
- (1) 보행자의 전용 통로 확보
- (2) 차량계건설기계(로더) 작업계획서 작성, 작업 경로내 접근 금지 표시 부착
- (3) 근로자 보행 시 전방, 좌우, 주의 확인 안전교육 실시



## 4. 범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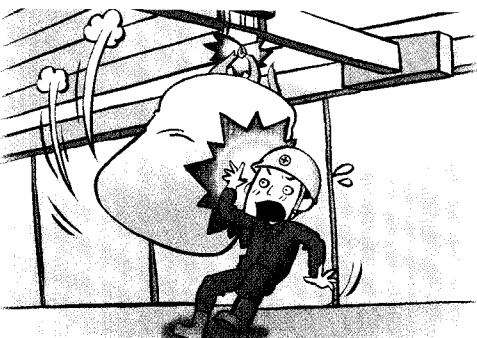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 주물사 모래백의 섬유로프 파단으로 낙하한 모래백에 협착

업종	금속제품 제조업
기인물	주물사 모래백
생산품	자동차 부품
재해유형	낙하
피해정도	인적 물적
	사망 1명
	-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피재자가 주물사를 보충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으로 주물사가 채워진 모래백(툰백)을 믹싱기 호퍼 상부로 이동시킨 후 모래백 하부의 묶인 부분을 푸는 도중 모래백의 섬유로프가 찢어지면서 모래백이 피재자에게 낙하하여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주물사가 가득 채워진 주물사 모래백(툰백)을 천정크레인을 사용하여 믹싱기 호퍼 상부로 이동 시키는 작업을 하던 중 주물사 모래백을 크레인에 걸어 놓고 모래백 하부의 묶인 부분을 푸는 작업에서 크레인의 훅에 걸려져 있던 모래백의 섬유로프가 찢어지면서 모래백이 피재자에게 낙하, 믹싱기 호퍼 와 주물사 모래백 사이에 피재자가 협착되어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섬유로프가 손상된 모래백(툰백)의 사용 및 작업전 점검 미실시
- (2)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계획서 미작성
- (3) 중량물 취급 작업의 작업지휘자 미배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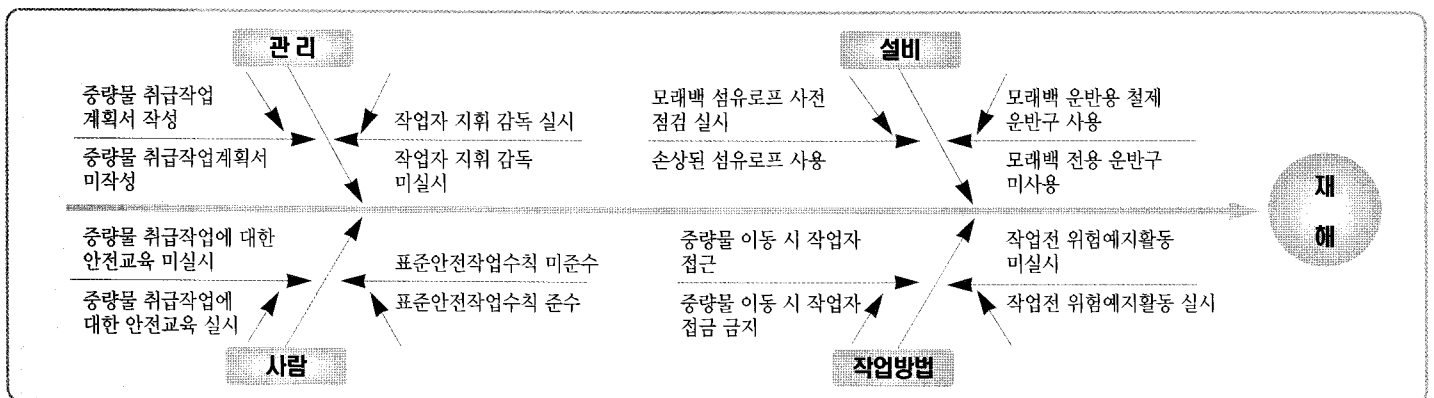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모래백(툰백)을 안전하게 운반할 수 있는 철제 전용 운반구 사용
- (2) 믹싱기 호퍼 위에 전용 운반구 및 모래백(툰백)을 올려놓을 수 있는 작업대의 설치
- (3) 중량물 취급 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교육 실시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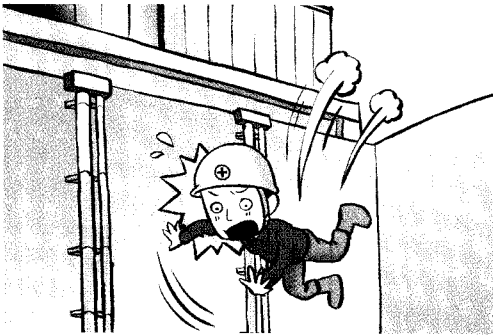
## 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 》》》 컨테이너 랫싱 작업중 홀드에 추락

업종	항만용역업
기인물	바닥
생산품	항만운수부대사업
재해유형	추락
피해정도	인적 사망 1명
	물적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선석 접안 선박에서 랫싱 작업중 피재자가 홀드 바닥에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00부드 작업장에서 선석 접안 선박의 랫싱작업을 하던 피재자가 개구부(110cm)에 빠지면서 9.4m 아래의 홀드에 추락, 몇 시간 후 동료 작업자가 발견하여 피재자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수술 도중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추락방지용 안전대 미사용
- (2) 안전난간대(가설)미설치
- (3) 협소장소에서의 위험 예지 부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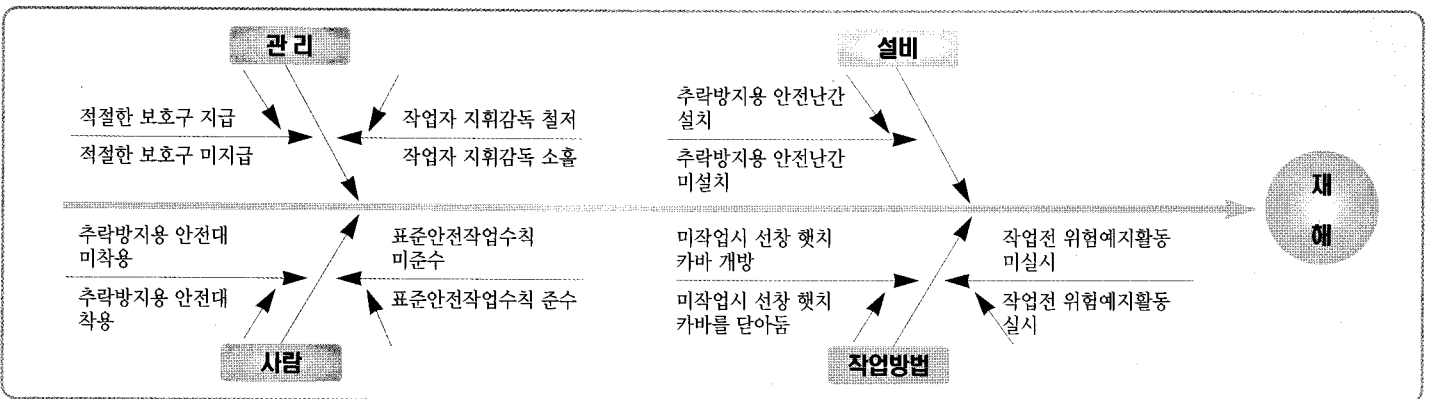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추락예방을 위한 가설 안전난간대 설치
- (2) 안전대 착용 난간대에 걸고 작업
- (3) 미작업 중인 홀드 헛치 카바는 닫아둠

## 4. 범위반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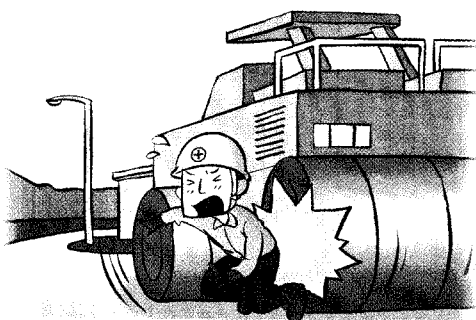
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
나. 법 제31조 제1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

# 》》 도로 포장작업중 후진중인 타이어 로울러에 협착

업종	건설업
기인물	로울러
생산품	협착
재해유형	도로 포장
피해정도	인적 물적
	사망 1명



## 1. 재해발생개요

도로개설 현장에서 피재자가 피니셔를 사용한 기층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작업 과정에서 마무리가 불안정한 곳을 세립아스콘으로 수정작업 하던 중, 후진하던 타이어 로울러에 깔려 사망한 재해

## 2. 재해발생과정

피재자를 포함한 포장공 3명은 피니셔(Asphalt Finisher) 장비의 후면 및 측면에서 포설된 아스콘을 정리하고 마무리가 불안정한 곳을 수정하는 등의 작업을 하던 중, 다짐작업을 하던 타이어 로울러 (15Ton)가 후진하면서 피재자가 타이어 로울러 측면에 부딪쳐 넘어지면서 로울러에 깔려 사망

## 3. 재해발생원인 및 예방대책

### 가. 재해 발생원인

- (1) 작업지휘자 미배치
- (2) 유도 및 신호수 미배치
- (3) 운전자의 운전미숙

### 나. 예방대책

- (1) 작업지휘자 배치 후 작업
- (2) 유도 및 신호수 배치 후 작업
- (3) 로울러 운전자의 안전교육 철저

## 4. 범위반사항

- 가. 법 제23조 안전상의 조치위반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
- 나. 법 제31조 제항 근로자 안전교육 미 실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

